

## 1. 입장료

구 분		정 수 기 준	금 액 (원)
개인	일 반	19세 이상 64세 이하	6,000
	청 소년 · 군 경	청소년 : 14세 이상 18세 이하 군 경 : 하사관 이하 군인, 의경 및 전투경찰	4,500
	노 인	65세 이상	3,000
	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	3,000
단체	일 반	19세 이상 64세 이하	4,800
	청 소년 · 군 경	청소년 : 14세 이상 18세 이하 군 경 : 하사관 이하 군인, 의경 및 전투경찰	3,700
	노 인	65세 이상	2,400
	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	2,400

## ※ 비 고

- 제주도민은 신분증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요금의 50%를 감면함.
- 단체는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7
------	----

2002년 12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 회부일자 : 2002년 11월 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2.12.26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기호 기획관리실장)

## 가. 제안이유

- 교육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한시기구 교육정보화추진팀과 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200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한시정원 감축 : △22명(총 정원 7,346명 → 7,324명)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한시기구 교육정보화추진팀과 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200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됨.

136 (第138回-第4次)

- 동 조례는 2001.1.1 교육정보화추진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임용된 전산직 22명(11개 교육청×2명)의 한시정원이 당초 예정된 2년의 기간이 도래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당연 개정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8
------	----

2002년 12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2.12.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기호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제증명수수료를 표준하고,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특별시 거주 학령대상자까지 적용하므로 중학교 입학 및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제증명수수료 단일화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입학 및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제증명수수료를 표준화하고,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특별시 거주 학령대상자까지 적용하므로 중학교 입학 및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안됨.
- 동 개정안은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제증명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권고공문(2002.5.20)이 시달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의하면 신원이나 학적, 회계 등에 관한 제증명수수료가 최저 300원부터 600원까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통일하여 3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